

한국무역상무학회지 제46권
2010년 5월 pp.315~350

논문접수일 2010.04.30
논문심사일 2010.05.13
심사완료일 2010.05.23

한·중 국제중재제도의 비교와 시사점*

오 원 석** · 이 경 화***

-
- I. 서 론
 - II. 한·중 중재기관
 - III. 한·중 국제중재절차 비교
 - IV. 중재판정의 불복, 집행 및 집행거부
 - V. 결론 및 시사점
-

주제어 : 중국중재, 국제중재규칙, 중재판정의 집행

I. 서 론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의 대 중국 무역규모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2009년 한중 무역규모를 보면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당당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한국도 중국의 수출국 중 5위, 수입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7-411-J05202).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국 중 2위를 차지하였다.¹⁾

한중무역의 이러한 급격한 증가는 곧 한중 무역분쟁 가능성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그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현재 국제거래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소송보다 국제중재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중 중재제도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가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저자는 본고를 통하여 중국을 상대로 무역이나 투자를 하는 한국기업들로 하여금 분쟁해결의 중요수단인 중재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도록 하고, 또한 중재판정 후 중국에서 집행을 하고자 할 때의 집행상의 문제점 및 한국기업의 유의점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 주제와 관련하여 여러 선행연구가 있었지만²⁾ 대부분 양국 주요중재기관의 중재절차나 판정집행의 절차에 대하여 비교하는 것에 그쳤고 판정집행의 실제와 문제점에 대하여는 다루지 않고 있다. 또한 중국 중재판정 집행에 관한 논제는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관련 논문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저자는 본고에서 오래된 자료로나마 중국 중재판정집행의 실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문제점을 제시하며 그에 대한 한국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 중국은 200여개의 중재기관에서 국제중재를 다루고 있으며 각자 중재규칙을 제정하여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 중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이하 CIETAC)에서 국제상사중재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자는 본

1) 2009년 한중 무역규모의 통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09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867억 달러, 수입은 542억 달러로써 이는 한국 총 수출의 24%, 총 수입의 17%를 차지하며, 2009년 중국의 대한국 수출은 536억 달러, 수입은 1,021억 달러였으며 이는 중국 총 수출의 4.5%, 총 수입의 10.2%를 차지한다. 2009년 중국의 수출금액별 교역순위를 보면 미국, 홍콩, 일본, 독일, 한국 순이며, 수입금액별 순위는 일본, 한국, 대만, 미국 순이다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2) 한중 중재규칙의 비교 및 중국중재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태경, "중국 상사 중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29권, 2006; 신군재, "KCAB 국제중재규칙과 CIETAC 중재규칙의 비교연구",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18권 제2호, 2008; 윤진기, "중국 중재법", 기업법연구, 한국기업법학회, 제12집, 2003; 이주원, "중국 중재제도의 특징에 관한 소고",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15권 제3호, 2005; 차경자, "중국의 섭외 및 외국중재판정 강제집행제도 연구",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15권 제2호, 2005; 허익범, "중화인민공화국 국제상사중재법제의 이해와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논문에서 CIETAC 중재규칙을 중심으로 중국의 중재규칙을 소개하려 한다. 또 한 한국의 유일한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이하 KCAB)은 국제중재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근 KCAB 국제중재규칙을 새롭게 제정하여 원 중재규칙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저자는 향후 국제중재에 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국제중재규칙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Ⅱ. 한·중 중재기관

1. 한국의 중재기관

대한상사중재원(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이하 KCAB라고 함)은 한국의 유일한 중재기관으로서 국내중재와 국제중재를 모두 다루고 있으며 또한 한국의 중재사와 그 역사를 같이 하고 있다.

한국에 처음으로 중재관련 기관이 설립된 것은 1965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부를 주축으로 하여 구성된 “중재법 제정을 위한 상임위원회”의 설립이 되겠으며 이 위원회에서 1966년 3월 16일 중재법을 제정하여 공포하면서 한국의 상사중재제도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며칠 뒤인 3월 22일에는 대한상공회의소 국제부 내에 국제상사중재위원회를 설립하였는데 이 것이 바로 현재의 대한상사중재원의 전신이 되겠다. 그 후 1970년 상공부허가에 따라 국제상사중재위원회는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협회로 독립하였고 1973년에는 자체의 상사중재규칙을 제정하였으며(대법원 승인)³⁾ 1980년 현재의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확대·개편되었다.⁴⁾

KCAB는 그동안 국제중재에 대해 별도의 규칙을 두지 않고 국내중재와 국제중재를 통합한 중재규칙을 적용하여 오다가, 점증하는 국제중재의 수요에 부응하고 국제중재를 활성화 시키고자 2007년 1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The Rule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for the Korean Commercial

3) 상사중재기관으로 지정받은 사단법인이 중재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중재법 제41조).

4) 대한상사중재원·한국중재학회, 「주해 중재법」, 2005, 중재법 개정연혁 부분 참고.

Arbitration Board)(이하 ‘국제중재규칙’이라 함)을 새롭게 제정하였다. 이 규칙은 기존의 중재규칙을 대체하거나 그것의 하부규칙인 것이 아니라 기존규칙과 대등하게 병존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서면으로 이 규칙에 따라 국제중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 적용되며(국제중재규칙 제3조) 앞으로 한국의 국제상사중재법의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⁵⁾

2. 중국의 중재기관

상술한 한국의 중재기관과는 달리 중국의 중재기관은 그 수도 많고 구조도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중국은 1987년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 함)⁶⁾에 가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4년 중재법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14개의 법률, 80여개의 행정 법규, 200개에 가까운 지방법규에서 중재를 규정하고 있었다.⁷⁾ 때문에 당시의 중재기관들은⁸⁾ 그 적용법률과 중재규칙, 절차 등 면에서 통일되지 못하였고 중재인 또한 행정부문과 관계가 깊었고 중재절차에 대한 강행규정도 많아 중재제도의 발전에 상당히 불리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1994년 중국정부는 모든 중재기관과 중재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을 제정(1995년 9월 1일 시행)하였으며⁹⁾ 그에 따라 중국의 각 지역에는 새로운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들이 설립되기 시작하였고 기존의 통일화되지 못했던 중재기관들도 중재법의 요구에 따라 재조직되었다.

5) 석광현, “대한상사중재원의 2007년 국제중재규칙의 주요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제49권 1호, 2008, 72면.

6)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협약(UN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1958).

7) 윤진기, “중국 중재법”, 기업법연구, 한국기업법학회, 제12집, 2003, 238면.

8) 1980년대의 《중화인민공화국경제계약중재조례》와 《중외합자경영기업법실시조례》 등 당시의 중재를 촉진하는 법률들에 의하여 1984년 당시 중국 전역에는 2442개의 중재기관이 존재하였고 1991년에는 그 수가 약 3500개에 달하였다고 한다. (허익범, “중화인민공화국 국제상사중재법제의 이해와 분석”, 박사학위청구논문, 2007, 23면.)

9) 1994년 8월 3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심화에 따라 급격히 늘어나는 대외무역분쟁 및 외국기업과의 합자, 합작투자 관련 분쟁의 중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결과 2000년에 이르러 재조직된 전국의 중재기관은 국내·국제중재기관을 통틀어 160개로 발전하였으며 2005년에는 180개, 2008년 말까지는 전국에 202개의 중재기관이 설립되었다.¹⁰⁾

1) 국제중재기관¹¹⁾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기 전까지 중국에는 대외교역의 증가로 인한 대외무역분쟁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국제중재기관이나 규범화된 중재규칙이 없었으며 단지 각 행정구역이나 성소재지 등에서 조례의 형식으로 중재에 필요한 자체 규정들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중국당국은 새로운 중재제도의 도입과 공식적인 중재기관을 발족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1954년 5월 6일 국무원 산하에 中國國際貿易促進委員會(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이하 CCPIT라 함)¹²⁾를 설립하여 국제중재사건을 담당할 조직구성, 처리할 사건의 대상과 처리원칙, 중재판정의 효력 등에 관한 일반규정을 제정하도록 하였다.

그 후 1956년 3월 31일 CCPIT는 《中国国际贸易促进委员会对外贸易仲裁委员会仲裁程序暂行规则》를 통과하고 對外貿易仲裁委員會¹³⁾를 설립하여 국

10) 2000년, 2005년의 중재기관수는 김태경, "중국 상사중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29권, 2006, 10면을 참고하였고, 2008년의 중재기관수는 中国仲裁網의 2009년 4월 14일 보도내용을 참조하여 얻어낸 결과이다. (<http://www.china-arbitration.com/news.php?id=1634>)

11)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내중재와 국제중재로 구분되어 있는데 중국은 특이하게 국제중재라는 용어 대신 섭외중재라고 쓰고 있다. 이는 중국 특유의 정치문제로서 외국, 특별행정구역(홍콩과 마카오), 대만과 관련된 중재를 총칭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이해를 돋고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국내중재 및 외국중재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국제중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12)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1988년 6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민간단체인 중국국제상회(China Chamber of International Commerce; CCOIC)를 조직하여 같은 이름으로 불려진다. 즉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중국국제상회는 "하나의 기관, 두개의 이름"이다. 중국국제상회는 한국의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의 역할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2005년 8월 중국국제상회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사단법인이 되었으며, 국제상회중국위원회(ICC China)와도 같은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 즉 중국국제상회는 ICC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국제상회중국위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다. 결국 CCPIT, CCOIC, ICC China는 하나의 기관을 칭하는 세 가지 이름인 것이다.

13) 이 명칭은 1988년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제상사중재사건을 전담하도록 하였으며, 1959년 1월 8일에는 《中国国际贸易促进委员会海事仲裁委员会仲裁程序暂行规则》를 통과하고 해사에 관한 국제 중재사건을 전담하는 海事仲裁委員會¹⁴⁾를 설립함으로써 이후 국제분쟁에 대한 각종 중재사건을 이 두 기관에서 전담하도록 하였다. 이 두 기관이 바로 중국의 2대 국제중재기관인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이하 CIETAC이라 함)와 중국해사중재위원회(이하 CMAC이라 함)이다. 본고에서는 상사중재를 중심으로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CMAC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고 CIETAC에 관해서만 다루고자 한다.¹⁵⁾

상술한 바와 같이 CIETAC은 원래 국제상사중재만 전담하는 기관이었으나 2000년 10월 1일부터는 중재규칙을 개정하여 국내중재사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¹⁶⁾, 2005년에는 중재규칙 제5장에 “국내중재에 관한 특별규정”까지 둠으로써 취급업무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사건처리통계를 보면 CIETAC은 세계 유명 국제중재기관들과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을 만큼 투실한 중재기관으로 발전하였으며 국제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아래 최근 몇 년간 세계 주요 국제중재기관들의 중재사건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 14) 이 명칭은 1988년 중국해사중재위원회(China Maritime Arbitration Commission: CMAC)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 15) CMAC에서 현재 운용중인 중재규칙은 3차례에 걸쳐 수정 후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관할대상을 제외하고는 조직과 기관, 중재절차, 중재인선임 등 모든 면에서 CIETAC의 중재규칙과 매우 비슷하다. 해사중재위원회의 관할사건은 선박임대차계약, 선박매매 건조 등, 해상보험, 선박담보, 컨테이너운송, 어업생산 해양자원개발이용, 선원노무 등 국제적 해사관련 분쟁이다(중국해사중재위원회중재규칙 제2조). 해사중재위원회의 임시보전조치나 판정의 집행은 해사법원이 별도로 담당한다. (허익범, 전계논문, 84면.) CMAC은 북경에 본부, 상해에 지부를 두고 大连, 广州, 天津, 宁波, 青島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다.(중국해사중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09-07-07 검색)
- 16) 또한 CIETAC은 2000년 10월 1일부터 “中國國際商會仲裁院”이라는 명칭을 함께 쓰고 있다. 이는 아마도 CCPIT가 “중국국제상회”라는 명칭을 함께 쓰고 있기 때문에 혼동을 줄이기 위하여 CCPIT산하의 기관인 CIETAC도 “중국국제상회중재원”이라는 명칭을 쓰도록 한 것 같다.

〈표 1〉 세계 주요 중재기관의 국제중재사건 접수현황

	2004	2005	2006	2007	2008
ICC	561	521	593	599	663
AAA	614	580	586	621	703
LCIA			133	137	213
SIAC	48	45	65	70	71
CIETAC	462	427	442	429	548
KCAB	46	53	47	59	47

자료: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홈페이지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AA: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LCIA: 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SIAC: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CIETAC: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KCAB: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CIETAC은 정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민간단체로서¹⁷⁾ 북경에 본부를 두고 上海(상해지부), 深圳(화남지부), 重庚(서남지부) 세 곳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¹⁸⁾ 전국에 19개의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다. 본부와 지부는 하나의 중재위원회로서 동일한 “중재규칙”과 “중재인명부”를 사용하고 있고, 연락사무소는 상담, 연구개발 등 부속업무만 취급하고 있다. 아래 수년간 CIETAC의 각 부문에서 중재사건을 접수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7) 중재위원회는 여타의 행정기구에 예속되지 않으며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중재위원회 상호간에도 예속적 관계를 갖지 않는다(중재법 제14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술하였듯이 CIETAC과 CMAC을 설립한 CCPIT는 국무원의 산하기관이고 일반중재위원회 또한 인정부의 협조를 받아 관련부서 또는 상업회의소가 설립하여야 하기 때문에 결코 중재위원회들은 독립적이지 않다.

18) 북경본부는 1956년에 설립하였고 화남지부, 상해지부는 각각 1989년, 1990년에 설립하였으며 서남지부는 2009년 1월 5일에 새로 설립하였다.

〈표 2〉 CIETAC 중재사건 접수현황

년도	북경본부	화남지부	상해지부	서남지부	총계
2009	국제/국내	300/350	90/126	167/443	0/3
2008	국제/국내	288/310	107/97	152/275	548/682
2007	국제/국내	251/379	72/84	106/226	429/689
2006	국제/국내	240/255	103/77	99/207	442/539
2005	국제/국내				427/552
2004	국제/국내	288/165	86/73	88/150	462/388
2003	국제/국내	254/119	82/49	82/119	422/287
2002	국제/국내	300/101	81/28	87/87	468/216
2001	국제/국내	335/85	110/28	117/56	562/169
2000	국제/국내	359/51	93/7	91/32	543/90
1999		428	111	130	669
1998		451	116	111	678
1997		490	123	110	723
1996		543	147	88	778
1995		660	146	88	902
1994		600	141	88	829
1993		389	57	40	486

자료: CIETAC홈페이지

(상술하였듯이 서남지부는 2009년 1월에 설립하였으므로 2009년 접수현황만 포함)

표2에서 보듯이 2000년 중재규칙 개정이후 CIETAC은 국내중재사건을 접수하기 시작하였으며 접수건수는 빠르게 증가하여 2005년부터는 국제중재사건 접수건수를 현저히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2) 일반중재기관¹⁹⁾

일찍 CCPIT에서 설립한 CIETAC이나 CMAC과 같은 국제중재전담기관을

19) 이 부분은 허익범, 전계논문, 97-98면을 주로 참고하였다.

제외하고²⁰⁾ 중국의 일반중재기관들은 모두 1995년 중재법이 시행됨에 따라 새로 설립되거나 증건된 기관들로서 2008년 말까지 전국에는 200개의 일반중재기관이 설립되었다.²¹⁾ 이러한 중재기관들은 각자 자신만의 중재규칙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모두 1995년 중재법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oo중재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조직과 구성, 국제중재사건의 처리절차와 판정 등 면에서 거의 유사하다. 그러므로 논자는 본고에서 대표적으로 북경중재위원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²²⁾

중국의 대외경제관계 발전과 더불어 국제상사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법 시행 이전에는 오직 CIETAC에서만 국제상사중재를 전담할 수 있었고, 더욱이 당시 CIETAC은 북경의 본부를 제외하고 심천과 상해 두 곳에만 지부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중재사건을 효율적으로 커버하기에는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불충분하였다. 이에 1996년 중재법 시행직후 국무원은 일반중재기관에서도 국제중재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시함으로써 중국의 국제상사중재기관이 전국 각지에 널리 분포되어있는 일반중재기관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중재기관들은 모두 중재규칙상에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어 국제중재에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중재기관의 국제중재사건 접수비중과 접수건수는 CIETAC에 비해 현저히 적은 실정이다. 예로 북경중재위원회의 중재사건 접수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 중국국제상업회의소(CCPIT)는 섭외중재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중재법 제66조).

21) 中国仲裁網(<http://www.china-arbitration.com/news.php?id=1634>)의 2009년 4월 14일 보도내용을 참조하였다.

22) 그렇다고 북경중재위원회의 중재사건 접수건수가 가장 많다는 것은 아니다. 2008년 중재사건 접수건수가 가장 많은 10개 중재위원회를 순서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중재위원회	武汉	广州	北京	重庆	深圳	CIETAC	西安	上海	南京	成都
접수건수	7808	4050	2057	2035	1968	1230	1116	1086	917	915

〈표 3〉 북경중재위원회 중재사건 접수현황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국내중재	441	656	871	996	1766	1926	2411	1826	2001	1758
국제중재	8	10	20	33	30	53	53	37	56	72

자료: 북경중재위원회 2000~2009년 보고서(북경중재위원회 홈페이지)

III. 한·중 중재절차의 비교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KCAB 국제중재규칙은 아직은 그 사용이 활발하지 못하나 국제중재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제정된 규칙인 만큼 앞으로 국제중재사건에 적용되는 핵심 규칙이 될 것으로 보고²³⁾, 논자는 본고에서 KCAB의 기존규칙이 아닌 국제중재규칙을 소개하려 한다.²⁴⁾

또한 중국은 전국 200여개의 중재기관에서 각자 국제중재규칙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국제중재는 CIETAC에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CIETAC 중재규칙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전술하였듯이

23) 여기서 “국제중재에 적용되는 유일한 규칙이 될 것이다”라고 쓰지 않고 “핵심 규칙이 될 것이다”라고 쓴 이유는, 당초 국제중재규칙의 기초자들의 의도는 국제중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국제중재규칙을 적용하고 기존규칙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었으나, 비용부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당사자들이 이 규칙의 적용에 합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이다(석광현, 전계논문, 90면). 때문에 앞으로도 국제중재규칙은 국제중재사건에 적용되는 중요한 규범이 될 수는 있어도 유일한 규범은 되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

24) 국제중재규칙을 제정하기 전 까지 KCAB는 국제중재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으며 국내중재와 국제중재에 모두 적용되는 중재규칙만 가지고 있었다. 이 중재규칙은 국내중재와 국제중재에 모두 적용됨을 분명히 하면서 여러 개의 조문에서 양자간에 차이를 두는데, 그러한 차이는 주로 국제중재에 국내중재보다 상대적으로 긴 기간을 제공한 것뿐이고 실질적인 차이는 거의 없었다. 결과 중재인의 선정방식이나 중재언어, 낮은 중재인수당 등으로 인해 국제중재사건을 처리하는데 많은 협약이 있었으며, 이에 KCAB는 AAA, ICC, SIAC 등 주요 국제중재기관의 국제중재규칙을 검토한 후 국제중재 수요에 부응하는 “Kcab 국제중재규칙”을 제정하여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석광현, 전계논문, 71면; 신군재. “KCAB 국제중재규칙과 CIETAC 중재규칙의 비교연구”,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18권 제2호, 2008, 35면)

CIETAC 중재규칙은 국내·국제중재에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국제중재절차뿐만 아니라 국내중재절차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분쟁금액에 따라 국제중재절차를 일반절차와 간이절차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²⁵⁾ 본고에서는 국제중재절차 중 중재판정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중재합의와 중재신청, 중재판정부의 구성 및 중재판정에 한하여 비교·고찰하려고 한다.

1. 중재합의

1) KCAB 국제중재규칙

KCAB의 국제중재규칙은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이 규칙에 따라 국제중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적용되며 당사자들은 서면으로 이 규칙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국제중재규칙 제3조).

이 조항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서면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중재법상의 관련 조항을 보아야 할 것이다.²⁶⁾

또한 “이 규칙에 따라 국제중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규칙에 따라”가 상당한 중시를 요한다. 즉, 중재합의시 당사자들은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에 회부한다”라고 명확히 밝혀야 하며 그렇지 않고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회부한다”거나 별다른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원 중재규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통상 실무자들은 특정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에 따른다고만 합의함으로써 본 규칙의 적용기회를 박탈 당하는데 실무자들은 이런 점에 유의하여 “국제중재규칙”이라고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조항은 “…국제중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라는 문구로 본

25) 간이절차는 분쟁금액이 50만위안을 초과하지 않거나, 분쟁금액이 50만위안을 초과하지만 일방 당사자의 서면신청과 다른 일방 당사자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

26) 당사자들이 서명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거나 교환된 서신, 전보 등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 일방 당사자가 당사자간 교환된 문서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이를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보며 또한 당사자간의 서면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어도 서면합의로 본다(중재법 제8조).

규칙의 적용범위를 국제중재에 제한하고 있다. 이에 논자가 보기에도 이러한 규정은 충분히 명확하지 않으며, 오직 국제중재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국내중재의 경우에도 이 규칙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면 적용가능한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본 규칙에서는 중재합의시 중재기관에 대해 언급할 것은 요구하지 않는다. 이는 한국의 중재법은 임시중재를 원칙으로 하고 기관중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기관중재에 합의하지 않는 한 임시중재를 행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아래 국제중재규칙에서 추천하는 중재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Any dispute, controversy or claim arising under, out of or relating to this contract (including non-contractual claims) and any subsequent amendments of this contract,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its formation, validity, binding effect, interpretation, performance, breach or termination, shall be referred to and finally resolved by arbitration under KCAB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which Rules are deemed to be incorporated by reference into this clause.”(국제중재규칙 표준중재조항)

2) CIETAC 중재규칙

CIETAC 중재규칙은 국제·국내 분쟁사건에 모두 적용되는 중재규칙으로서 (CIETAC 중재규칙 제3조) 당사자가 CIETAC에서 중재하기로 합의하였거나²⁷⁾, 이 규칙에 따라 중재하기로 합의한 경우 적용된다. 당사자가 다른 중재 규칙을 적용하기로 합의하거나 또는 이 규칙의 관련 내용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르지만 그 합의를 이행할 수 없거나 그 합의가 중재지의 강행법규와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당사자가 CIETAC에서 중재하기로 합의하였지만 중재규칙을 합의하지 않은 경우 이 규칙에 따라

27) CIETAC의 이전 명칭은 대외무역중재위원회이고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중국국제상회중재원」이라는 명칭을 함께 쓰고 있기 때문에 중재합의시 다음의 명칭들 중 하나를 사용하면 모두 CIETAC에서 중재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본다. 그 명칭들은 모두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또는 그 분회, 대외무역중재위원회,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중국국제상회,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중국국제상회의 중재위원회/중재원 등이다 (CIETAC 중재규칙 제2조).

중재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보며, 이 규칙에 따라 중재하기로 합의하였지만 중재기구를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CIETAC에서 중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CIETAC 중재규칙 제4조).

이 조항에서는 당사자가 “CIETAC 중재규칙 이외의 다른 규칙을 적용할 수 있고 또한 이 규칙의 관련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 규칙에 따라 중재하기로 합의하였지만 중재기구를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CIETAC에서 중재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는데 이는 “이 규칙에 따라 중재하기로 합의하고 다른 중재기구에서 중재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한 중재기구가 어디든 상관없이 본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즉 중국 외에서도 CIETAC 중재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 조항을 보면 중재합의시 중재기관을 지정할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은 임시중재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기관중재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임시중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서면합의와 중재회부의 의사표시만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²⁸⁾ 중국의 중재법은 서면합의, 중재회부의 의사표시와 중재의 대상 그리고 중재위원회까지 지정하여야만 유효한 중재합의로 인정하며(중재법 제16조), 중재합의에서 중재의 대상인 분쟁 또는 중재위원회를 명시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중재합의를 무효화하기까지 한다(중재법 제18조). CIETAC 중재규칙은 본 규칙에 따라 중재하기로 합의한 경우 중재기구를 합의하지 않아도 CIETAC에서 중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중재규칙만 명시하면 중재위원회를 명시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본 규칙에서는 서면합의만을 유효한 중재합의로 보고 “서면”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²⁹⁾ 중재조항이나 계약에 첨부된 중재합의는 독립적이어서 당해 계약의 변경, 해지, 종료, 양도, 실효, 무효, 취소 및 성립 여부의

28) 한국 중재법 제8조, 뉴욕협약 제2조, 영국 중재법 제6조, 독일 중재법 제1029조 등 참조(신군재, 전계논문, 40면 각주).

29) 서면형식은 계약서, 서식, 전보, 전신, 모사전송, 전자교환문서와 전자우편 등 유형적으로 기재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을 포함한다. 중재신청서와 답변서의 교환과정에서 일방 당사자가 중재합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지 않는 경우 서면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CIETAC 중재규칙 제5조 3항).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CIETAC 중재규칙 제5조).

아래 CIETAC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중재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Any dispute aris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shall be submitted to the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for arbitration which sha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Commission's arbitration rules in effect at the time of applying for arbitration. The arbitral award is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³⁰⁾

2. 중재신청

1) KCAB 국제중재규칙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은 중재신청서 제출과 함께 신청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신청서가 사무국에 접수되면 중재절차가 개시된다. 신청서가 필요한 매수만큼 제출되지 않았거나 신청인이 신청요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 내에도 위 요건들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청이 종결된다. 또한 중재합의에서 당사자의 중재인 선정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재신청시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국제중재규칙 제8조).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재합의에서 당사자의 중재인 선정을 요하는 경우 역시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만약 피신청인이 기한 내에 위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한이 지났음에도 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답변권 및 중재인 선정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피신청인이 반대신청을 할 경우에는 반대신청은 답변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반대신청의 원인은 당사자들 사이의 중재합의에 기초하여야 한다(국제중재규칙 제9조).

30) CIETAC 홈페이지(2010.3.8).

http://www.cietac.org.cn/english/introduction/intro_1.htm#5

2) CIETAC 중재규칙

CIETAC 중재규칙과 KCAB 국제중재규칙의 중재신청 절차는 거의 유사하다. 즉, 신청인은 중재신청서를 제출하고 CIETAC의 중재비용표에 따라 중재비용을 예납하여야 하며 신청서가 중재위원회에 도착하면 중재절차는 개시된다(CIETAC 중재규칙 제9조, 제10조). 중재위원회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심사하여 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하고 요건에 부합되면 이를 수리한 다음 중재통지서와 중재인명부 등을 양 당사자에게 발송한다(CIETAC 중재규칙 제11조).

중재통지를 받은 피신청인은 4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제출기한연장 여부 및 기한이 지난 답변서의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³¹⁾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중재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CIETAC 중재규칙 제12조).

피신청인이 반대신청을 할 경우, 중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반대신청인 역시 중재비용표에 따라 중재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인은 반대신청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반대신청에 대한 답변을 하여야 한다(CIETAC 중재규칙 제13조).

3. 중재판정부

1) KCAB 국제중재규칙

KCAB 국제중재규칙에 의하면 중재판정부에 대한 당사자 합의가 없을 경우 단독 중재인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서가 피신청인에게 송부된 후 30일 이내에 당사자의 일방이 3인 중재에 의할 것을 신청하면 사무국이 그 수락여부를 결정한다(국제중재규칙 제11조).³²⁾

중재인 선정에 있어서는, 기존규칙에서는 사무국이 중재인명부에서 10명의 후보자를 지정하고 그에 당사자들이 희망순위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지만 국제중재규칙에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

31) 후술하겠지만,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중재통지를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결성된다.

32) 이는 3인 중재인을 원칙으로 하는 중재법상 내용과 상치되는바(중재법 제11조) 국제중재규칙 제정시 중재비용의 증가를 우려한 결과로 짐작된다(석광현, 전계논문, 74면).

다. 단독중재인의 경우에는 단독 중재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합의로 선정하고, 3인 중재인의 경우에는 양당사자가 각각 1인을 선정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2인이 의장중재인을 선정한다. 여기서 양당사자가 각각 1인을 선정하는 기한이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재판정부 구성기한은 명확하지 않다. 정해진 기한 내에 당사자가 단독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거나 선정한 2인이 의장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무국이 선정하도록 하며 사무국이 중재인을 선정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들과 국적이 다른 자를 단독 중재인이나 의장중재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국제중재규칙 제12조).

그렇게 중재인은 선정되었으나 선정된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의심을 야기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기피대상자를 포함하여 기타 중재인들과 분쟁 당사자들은 기피신청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밝힐 수 있다.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 합의가 우선하며³³⁾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무국이 결정하는데(국제중재규칙 제13조)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기피신청을 하여야 하며 법원의 기피결정에 대하여는 항소할 수 없다(중재법 제14조).

2) CIETAC 중재규칙

CIETAC 중재규칙상의 중재판정부 역시 단독 또는 3인 중재인으로 구성되는데 당사자간 합의가 없을 경우 KCAB 국제중재규칙과는 달리 3인 중재인을 원칙으로 한다(CIETAC 중재규칙 제20조).

중재인은 CIETAC의 중재인명부 내에서 선정되어야 하며 중재인명부 외에서 중재인을 선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CIETAC 중재규칙 제21조). 중재인명부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KCAB 기존규칙과 유사한데, 국제중재규칙은 이와 달리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당사자가 합의로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33) 국제중재규칙 제13조 제5항: 일방 당사자가 중재인 기피신청을 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그에 동의할 수 있고 그러한 동의가 없는 경우에 기피대상 중재인은 자진 사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중재인 기피에 대하여 당사자 합의가 우선함을 말해준다.

중재판정부가 단독 중재인인 경우 당사자들은 피신청인이 중재통지를 수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합의하여 중재인을 선정하거나 CIETAC 위원장에게 위임하여야 하고, 3인으로 구성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중재통지를 수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각자 1인의 중재인을 선정 및 의장중재인을 합의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또는 CIETAC 위원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위 기한 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거나 CIETAC 위원장에게 위임하지 않은 경우, CIETAC 위원장이 선정한다(CIETAC 중재규칙 제22조 제1,2항). 결국 CIETAC 중재규칙 하에서 중재판정부는 중재통지 후 15일 이내에 구성되는 바 이는 KCAB 국제중재규칙 하의 중재판정부 구성일보다 짧다고 볼 수 있다.³⁴⁾

의장중재인을 선정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양 당사자가 각각 1~3인의 의장중재인 후보를 CIETAC에 추천하고 그 중 중복되는 중재인이 1인이 있으면 그 1인이 의장중재인이 되고 중복되는 중재인이 다수면 CIETAC 위원장이 그들 중에서 선정한다. 만약 중복되는 중재인이 없을 경우에는 CIETAC 위원장이 후보명단에 없는 자를 의장중재인으로 선정한다(CIETAC 중재규칙 제22조 제3항). 그러나 실무상 국제거래의 당사자들은 자신 국가의 중재인을 추천할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중재인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봄에 사실상 CIETAC 위원장이 의장중재인을 선정하게 될 것이다.

CIETAC 중재규칙은 KCAB 국제중재규칙과는 달리 당사자가 합의를 못하여 위원장이 중재인을 선정하게 될 경우 양 당사자와 국적이 다른 중재인을 선정해야한다는 규정이 없다. 때문에 국가법원의 중립을 믿지 못하여 중재를 선택한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중재판정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³⁵⁾

이렇게 선정된 중재인은 취임시 중재위원회에 그 공정성 및 독립성에 합리적인 의문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며(CIETAC 중재규칙 제25조) 당사자들은 이러한 고지를 통지받은 후 기피사유를 발견하

34) KCAB 국제중재규칙 하에서, 단독중재인은 중재통지 후 30일 이내, 3인중재인의 경우 의장중재인은 양당사자가 각각 1인을 선정한 후 30일 이내에 선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비록 양당사자가 각각 1인을 선정하는 기한이 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 30일 이내에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때문에 이는 CIETAC 중재규칙 하의 15일보다 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5) 신군재, 전계논문, 44면.

면 10일 이내에 기피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그 고지로 인한 기피신청권은 상실하게 된다.

고지사항 중에 기피사유가 없었지만 나중에 기피사유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KCAB와 마찬가지로 15일 이내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 합의가 우선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은 법원이 최종결정을 하는데 반해 중국은 기관중재만 인정하기 때문에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중재법 제36조, CIETAC 중재규칙 제26조).

4. 중재판정

1) KCAB 국제중재규칙

KCAB 국제중재규칙에서 중재판정은 당사자 합의가 없는 한 최종 서면제출일과 심리 종결일 중 나중의 날짜로부터 45일 이내에 서면으로 내려져야 하며 판정은 중재인 과반수의 결의에 따른다. 과반수의 결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중재인의 결정에 따른다.

중재인 전원의 결의가 아니더라도 중재판정문에는 반드시 중재인 전원이 서명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일부 중재인이 서명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중재인이 그 사유를 기재하고 대신 서명하여야 한다(국제중재규칙 제30, 31, 33조).

중재절차가 개시된 후 당사자들이 화해에 이르게 되면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화해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당사자들의 요청이 없으면 당사자들이 화해하였다는 확인서를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중재절차를 종결한다(국제중재규칙 제34조).

중재판정부는 판정이 내려진 후 30일 이내에 판정문의 오기, 오산, 오탏 등 오류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도 판정문 수령 후 30일 이내에 그러한 오류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요청 수령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정하여야 한다(국제중재규칙 제36조).

중재판정에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판정문 수령 후 30일 이내에 추가판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재판정부는 그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추가판정을 하여야 한다(국제중재

규칙 제37조).

2) CIETAC 중재규칙

CIETAC 중재규칙에 의하면 중재판정은 판정부 구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려져야 하고 중재판정은 KCAB 국제중재규칙과 마찬가지로 과반수 중재인의 결의에 따르며 과반수의 결의를 형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중재인의 의견에 따른다. 소수 중재인의 의견이나, 의장중재인의 의견에 따를 경우 나머지 중재인의 의견은 기록되지만 하고, 판정문에 첨부할 수도 안할 수도 있으나 판정문의 구성부분은 아니다.

판정문에는 중재위원회가 날인하고 판정을 내린 중재인들이 서명하여야 하며, 판정과 다른 의견을 가진 중재인들은 서명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KCAB 국제중재규칙과는 달리 중재위원회가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CIETAC 이 기관중재만 인정하기 때문이다(CIETAC 중재규칙 제42, 43조).

CIETAC 중재규칙의 또 다른 특징은 중재판정부가 판정문에 서명하기 전에 판정문 초안을 중재위원회에 교부하여 확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CIETAC 중재규칙 제45조). 이러한 규정은, 중재판정이 중재위원회의 간섭을 받게 됨으로써 중재위원회가 소재한 국가나 위원회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판단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불공정한 판정을 내릴 가능성을 안고 있다.

판정이 내려지면 당사자는 판정문 수령 후 30일 이내에 판정문의 기재, 인쇄, 계산 등의 착오에 대해 정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재판정부는 신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정정신청이 없어도 중재판정부는 판정문 작성일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CIETAC 중재규칙 제47조).

중재판정에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판정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추가판정을 신청할 수 있고 중재판정부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추가판정을 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판정문 작성일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직권으로 추가판정을 할 수 있다(CIETAC 중재규칙 제48조).

IV. 중재판정의 불복, 집행 및 집행거부

1. 한국

중재절차에 대해서는 앞장에서와 같이 특정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면 본 장의 중재판정의 불복과 집행에 대해서는 그 국가의 중재관련 법률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한다.

한국의 중재관련 법률은 1973년에 가입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 함)과 《대한민국 중재법》(이하 법이라 함)이 있으며 그 외 판정의 불복이나 집행과정에 적용되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³⁶⁾ 등이 있다.

한국의 중재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한민국 국내에서 내려진 국내중재판정과 외국중재판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 그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려한다.

1) 중재판정의 불복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당사자가 중재판정문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제기하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에 의해서만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중재법 제36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법 제36조).³⁷⁾ 즉, 국내중재판정은 위의 조항을 적용하여 중재판

36) 민사집행법은 2002년 1월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4차례의 개정을 거쳤으며 2009년 3월부터 제4차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민사집행법 제1조).

37) 법 제36조 제2항: 1.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경우, 1)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합의시 무능력자였던 사실 또는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이나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무효인 사실, 2)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중재인선정이나 중재절차에 관하여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3)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실, 다만 범위를 벗어난 부분과 벗어나지 않은 부분이 분리될 수 있을 경우에는 벗어나는 부분의 판정만 취소, 4) 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 2.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경우, 1) 중재판정의 대상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을 때, 2) 중

정을 취소할 수 있다.

외국중재판정의 취소에 대하여는 뉴욕협약 제5조 제1항을 해석하면 “외국중재판정은 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나 그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만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법원은 외국중재판정에 대하여 취소할 권한이 없다.

2) 중재판정의 집행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지만 강제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요구하는 당사자는 반드시 법원에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을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35조, 제37조 제1항).

국내중재판정은 판정에 중재법 제36조 제2항의 판정취소사유가 없는 한 강제집행 하여야 하며(법 제38조) 외국중재판정은 그 판정이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을 경우에는 동 협약에 따라 집행되고,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법 제39조).³⁸⁾ 따라서, 한국은 뉴욕협약에 상호주의와 상사중재를 유보조건으로 가입하고 있으므로 뉴욕협약 가입국의 중재기관에서 내린 상사중재판정의 집행에 대해서는 협약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후자의 법률들을 적용하게 된다.

3) 중재판정의 집행거부

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경우.

- 38) 민사소송법 제217조: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외국중재기관의 중재판정도 이와 같다고 봄)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을 것;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7조: 1) 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면 각하하여야 한다. 1) 외국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 2) 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

상술하였듯이 국내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6조 제2항의 판정취소사유가 없는 한 강제집행 하여야 한다. 즉 중재법 제36조 제2항의 판정취소사유가 곧 법원의 국내중재판정에 대한 집행거부사유가 되는 것이다.

외국중재판정일 경우에는 그것이 뉴욕협약 제5조의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법원은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³⁹⁾ 뉴욕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의 중재 기관에서 내린 중재판정일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에 해당되면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재법 제36조 제2항의 국내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와 뉴욕협약 제5조의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는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국내중재판정과 외국중재판정의 집행 및 집행거부요건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⁴⁰⁾

2. 중국

중국은 중재와 관련하여 1991년의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이하 민사소송법이라 함)과 1994년의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이하 중재법이라 함) 및 많은 사법해석을 가지고 있으며 그 외 1987년에 가입한 《뉴욕협약》과 중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들이 있다.

중국에서의 중재는 국내중재, 국제중재, 외국중재로 구분되며 여기서 국내중재는 여하한 섭외요인이 없는 국내판정이고 국제중재는 섭외요인이 있는 국내판정과 홍콩, 대만, 마카오와 관련된 중재판정이며 외국중재는 중국이외 국가

39)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1) 당사자가 그들에게 적용될 법률에 의하여 무능력자였든가 또는 준거법이나 판정을 내린 국가법에 의하여 합의가 무효인 경우, 2) 판정이 불리하게 원용되는 당사자가 중재인 선정이나 중재절차에 관하여 통고를 받지 못하였거나 기타 이유로 인하여 응할 수 없었을 경우, 3) 판정사항이 중재회부조항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다만 중재회부사항에 대한 판정과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중재회부사항에 대한 판정부분은 승인됨, 4) 중재기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중재합의나 중재를 행하는 국가의 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5) 판정이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을 갖추지 못했거나 판정이 중재를 행한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나 그 국가의 법에 의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제2항: 1) 분쟁대상이 그 국가의 법에 의해 중재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2) 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

40) 이호원, “한국에 있어서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13권 1호, 2003, 107면.

의 중재기관에서 내려진 판정이다.⁴¹⁾ 여기서 섭외요인이란, 계약체결 주체의 일방 혹은 쌍방이 외국인, 무국적인, 외국법인 혹은 기타 경제조직이거나 계약의 목적물이 외국영토 내에 있거나 민사권리·의무를 발생, 변경, 소멸하는 법적사실이 외국에서 발생하였을 경우를 말한다.⁴²⁾

이러한 세 가지 중재판정에 대하여 상술한 중재관련 법률들은 서로 다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래 그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려한다.

1) 중재판정의 불복

중국의 중재판정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확정적 법적효력을 가지며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외한 기타 불복을 할 수 없다.

불복 당사자는 중재위원회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⁴³⁾ 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국내중재일 경우에는 중재법 제58조의 실체적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⁴⁴⁾ 국제중재일 경우에는 중재법 제70조의 절차적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취소판결을 내린다.⁴⁵⁾ 중국은 2심제를 도

41) Peerenboon. R., "Seek Truth From Facts: An Empirical Study of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n the PRC",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 49, 2001, 251p.

42) 最高人民法院关于贯彻执行《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若干问题的意见, 1988년 1월.

43) 현재 중국에는 2700여개의 기충인민법원, 약 400개의 중급인민법원, 29개의 고급인민법원이 있으며, 중앙에 설치된 1개의 최고인민법원이 있다. 그 외에도 전문법원인 군사법원, 해사법원, 삼립법원 등이 있다(차경자, “중국의 섭외 및 외국중재판정 강제집행제도 연구”,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15권 제2호, 2005, 270면).

44) 중재법 제58조: 당사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중재위원회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 2)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사안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나 중재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난 경우, 3)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경우, 4) 중재판정의 근거가 된 증거가 위조된 것일 경우, 5) 상대방 당사자가 공개하지 않고 제출한 증거가 중재판정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진 경우, 6) 중재인이 뇌물을 수령하였거나 개인적 영리를 위해 기만행위를 하였거나 법 적용을 그르친 경우. 전술한 사유 중 하나가 발견되거나 중재판정이 공공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중재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5)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계약 중에 중재조항을 삽입하지 아니하였거나 사후에 서면의 중재부탁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신청인이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진행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기타 피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원인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없었던 경우, 3)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의 절차가 중재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입하고 있기 때문에 중급인민법원에 신청한 사건은 고급인민법원의 최종심을 거쳐 판결을 내리게 된다.

중재판정 취소의 소는 당사자가 중재판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인민법원은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재판정을 취소하거나 그 소를 기각하여야 한다(중재법 제59조, 제60조).

외국중재판정의 취소에 대하여 중국의 중재관련 법률은 여하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뉴욕협약의 해석에 따라 중국 법원은 외국중재판정에 대하여 취소할 권한이 없다.

2) 중재판정의 집행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국내중재판정의 집행신청은 피집행인의 주소지 혹은 재산소재지의 기충인민법원에 하여야 하며(민사소송법 207조) 국제중재판정의 집행신청은 피집행인의 주소지 혹은 재산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259조). 만약 피집행인 혹은 그의 재산이 중국의 영내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은 반드시 관할권을 가진 국가의 법원에 집행신청을 하여야 한다(중재법 제72조).

외국중재판정이 중국인민법원의 승인과 집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인이 직접 피집행인의 주소지 혹은 재산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집행신청을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뉴욕협약에 상호주의와 상사중재를 유보조건으로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인민법원은 뉴욕협약 가입국의 중재기관에서 내린 상사중재사건에 대해서만 협약의 규정을 적용하여 집행판결을 내리고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 혹은 호혜원칙에 의해 판결을 내린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중재판정 집행신청 기한은 위 세 가지 경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중재 쌍방 혹은 일방이 자연인일 경우 1년, 쌍방이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일 경우 6개월이다(민사소송법 제76조).

위와 같이 인민법원에 중재판정의 집행신청을 하여 중재판정 집행판결이 내

려지면, 당사자는 그 집행판결에 대해 상소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140조).

3) 중재판정의 집행거부

국내중재일 경우 신청인의 중재판정 집행신청에 대하여 피집행인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할 경우, 중재판정의 집행은 법원의 심사가 끝날 때까지 중지되며(중재법 제63조), 법원은 중재판정에 대하여 실체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후 증거가 유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거부를 할 수 있다.⁴⁶⁾

국제중재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법원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절차상의 심사와 사회공공이익에 반하는지를 심사하여 집행거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중재법 제71조).

외국중재판정은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뉴욕협약 제5조에 해당될 경우 인민법원은 그 승인과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만약 뉴욕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의 중재기관에서 내린 중재판정일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 또는 호혜원칙에 의해 집행거부요건을 만족할 경우 집행을 거부한다.

전술하였듯이 국제중재판정과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집행신청은 모두 피집행인의 소재지 또는 재산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하게 되며, 이럴 경우 법원은 자국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이 집행거부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인민법원은 “집행거부에 대한 사전보고제도”를 도입하여 중급인민법원이 집행거부판결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관할 고급인민법원에 심사를 요청해야 하고, 고급인민법원 역시 집행거부에 동의할 경우 반드시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최고인민법원에서 동의한 후에야 집행거부판결을 내릴 수 있게 하였으며⁴⁷⁾ 그렇게 내려진 집행거부판결에는 항

46)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1) 당사자가 계약 중에 중재조항을 규정하지 않았거나 사후에 서면의 중재부탁에 이르지 못한 경우, 2) 판정된 사항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중재기구의 중재권한을 벗어난 경우, 3)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법정절차를 위반한 경우, 4) 사실인정의 주요 증거가 부족한 경우, 5) 법률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6) 중재인이 해당 사건을 중재할 때 뇌물을 수취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위법한 판정행위를 한 경우, 7) 해당 중재판정이 사회의 공공이익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할 수 없다.⁴⁸⁾ 결과 이 제도로 인하여 중국에서의 국제·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이 용이해졌는데, 실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대법원에 보고된 10건의 중재거부사건 중 6건이 집행판결을 받았고 1건이 부분 집행되었다.⁴⁹⁾

V. 결론 및 시사점

1. 중국의 중재판정 집행 현황

앞에서 우리는 한·중 중재기관의 중재절차와 중재판정을 집행함에 있어서의 법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정확한 절차에 따라 내려진 중재판정에 대해 적법하게 집행신청을 하였을 경우, 과연 그 집행은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가?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중국을 상대로 한 국제중재판정이나 외국중재판정은 중국에 있는 피집행인의 소재지 혹은 재산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집행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중급인민법원에 신청한 사건의 집행율은 과연 얼마나 될까? 중국에는 약 400개의 중급인민법원이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접수하거나 처리한 사건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이나 기타 기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중국의 국제·외국중재판정의 강제집행 신청 건수와 집행율을 파악하려면 모든 중급인민법원을 일일이 조사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때문에 아직까지 중국에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없고 다만 CCPIT 산하의 중재연구소(Arbitration Research Institute, 이하 ARI라 함)에서 1997년에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보고서와⁵⁰⁾ UCLA 법대의 Peerenboom

47) 人民法院处理与涉外仲裁及外国仲裁事项有关问题的通知, 1995년 8월.

48) 最高人民法院关于当事人对人民法院撤销仲裁裁决的裁定不服申请再审人民法院是否受理问题的批复, 1999년 2월.

49) Li Hu,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and Court Intervention in the PRC", a speech paper for the Inaugura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bitration, 2003.3, 9p.

교수가 2001년 자체적으로 조사한 통계자료가 있을 뿐이다.⁵¹⁾

〈표4〉 중국의 국제·외국중재판정의 집행율

	ARI의 통계(1991~1996) (43개 중급인민법원과 해사법원으로부터 자료 수집)				Peerenboom의 통계(1991~1999) (무작위로 수집한 72개의 국제·외국중재를 대상)			
	신청	집행	거부	집행율	신청	집행	거부	집행율
국제중재	134	97	37	72%	47	22	25	47%
외국중재	5	3	2	60%	25	13	12	52%
합 계	139	100	39	72%	72	35	37	49%

표4를 보면 ARI 통계의 국제·외국중재판정의 집행율은 약 72%이고 Peerenboom 통계에서의 집행율은 약 49%로서 둘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Peerenboom 교수는 그 이유에 대해서, ARI이 통계자료를 구성함에 있어서 국가보호차원에서 불성실하였거나 혹은 법원이 자료를 제공할 때 지역보호차원에서 불성실하였을 수 있으며 또한 계류 중인 사건을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통계에 포함시켰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⁵²⁾ 하지만 어느 것이 더 정확한 통계인지는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단지 우리는 본 비교를 참고하여 어느 정도 짐작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Peerenboom 교수는 또한 통계결과의 집행율 49%는,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을 100% 회복한 사건 17%, 중재금액의 75~99%를 회복한 사건 17%, 중재

50) ARI는 본 통계를 위해 310개의 중급인민법원과 해사법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결과 43개의 법원으로부터 답변을 받아 그것을 바탕으로 본 통계를 구성하였다 (Wang Sheng Chang,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 the PRC", *ICCA Congress Series No. 9*, 1999). ARI의 통계자료를 보면 1991년 이전의 수치도 나와 있는데, 1991년에 정식으로 제정된 민사소송법에서 집행거부에 대한 규정을 두기 전까지 중국에는 집행거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모든 집행신청이 이행되었으므로 저자는 그 부분의 수치를 통계에서 제외했다.

51) Peerenboom, R.은 UCLA법대의 교수이며 북경 Yi Wen Law Firm의 자문위원도 겸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통하여 중국법원에서 국제·외국중재판정의 강제집행을 처리해본 경험이 있는 실무자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본 통계를 구성하였다 (Peerenboom, R., *op. cit.*, 249p.).

52) Peerenboom, R., *op. cit.*, 267~268pp.

금액의 50-74%를 회복한 사건 7%, 그리고 중재금액의 50% 이하를 회복한 사건 8%로 구성되었다고 하였다. 즉, 중국법원에 중재판정집행신청을 하면 중재금액의 75%이상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약 34%이고 중재금액의 50% 이상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약 40%이며 신청사건의 약 60%는 집행거절되거나 취소되고 집행되더라도 중재금액의 50% 이하밖에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⁵³⁾

다시 말하면, Peerenboom통계에 따르면 중국법원에 중재판정 집행신청을 한 외국투자자가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은 약 34-40%로서 효율성이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법원에서 집행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표5〉 중국법원의 국제·외국중재판정 집행거부이유

ARI통계		Peerenboon통계	
집행거부 건수	거부사유	집행거부 건수	거부사유
17	집행대상 재산이 없음	16	집행대상 재산이 없음
3	기타 불명확한 사유	3	기타 불명확한 사유
10	기타 집행 상 어려움		
3	피집행인 존재		
2	중재진행 통보 못 받음		
2	사회공공이익에 위배됨		
1	당사자 진술권 없음		
1	중재판정부 월권		
1	법원 관할원 아님		
		18	여러 가지 법률적 사유

표5에서 보듯이 집행거부 이유 중 집행대상 재산이 없어 이행되지 못한 경우가 가장 많은데 두 통계에서 모두 집행거부 건수의 약 43%를 차지한다. 또한 ARI 통계에는 전체의 25%를 차지하는 10건이 집행상의 어려움으로 집

53) Peerenboom, R., *op. cit.*, 264-265pp.

행거부 되었고 기타 불명확한 이유로 집행거부 된 사건도 각각 3건씩 있다. 즉, 중국법원의 집행거부사유 중 피집행인이 재산이 없다든가, 판정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가 혹은 기타 불명확한 이유로 집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국제적으로 중국법원의 집행에 대하여 평판이 좋지 않다.⁵⁴⁾

그렇다면 중국을 상대로 무역거래를 하거나 투자를 하는 한국기업들은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 대처해야 할 것인가?

2.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1) 계약상대방의 재정상태 확인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판정을 받을 경우, 상술과 같이 중국에서는 집행대상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거부되므로 한국기업은 유리한 판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손해를 회복할 수 없다. 이에 대비하여 한국기업들은 계약체결이전에 미리 상대방의 집행가능 재산상태에 대하여 조사를 해두어 유리한 판정을 받고도 집행대상 재산이 없다고 집행거부 되는 경우를 방지해야 한다.

2) 중국법원의 집행거부사유에 대한 숙지

집행대상 재산이 없어 집행거부 되는 것은 상술과 같이 방지할 수 있지만 불명확한 이유로 집행거부 되는 것은 한국기업의 입장에서는 별다른 대비책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집행거부의 마지막 사유인 법적거부사유에 해당하여 집행거부 되는 것은, 한국기업들에서 중국의 집행거부사유를 숙지하여 준수하기만 한다면 방지할 수 있어 보인다. 즉, 국제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는 중국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이고,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는 뉴욕협약 제5조인데 한국기업은 이러한 조항들을 숙지하여 준수함으로서 그로 인하여 집행거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3) 중재지 선정

국제분쟁이 발생하여 중재로 해결해야 할 경우 한국 당사자는 한국의 중재

54) 차경자, 전계논문, 274면.

기관에서 판정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한데, 그 이유는 시간적·금전적으로도 그렇지만 익숙하지 못한 타국의 법제, 문화, 가치관에 대해 자국보다 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⁵⁵⁾ 중국은 1987년에 뉴욕협약에 가입함으로서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이 가능해 졌고 “사전보고제도”를 실시함으로서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이 용이해졌기 때문에 한국에서 중재판정을 반더라도 중국에서 집행하는데는 법률상 문제가 없다. 때문에 한국기업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에 중재지를 되도록 한국으로 명시하는 것이 유리하며, 만약 한국에서 중재하는 것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홍콩이나 싱가풀, ICC 등 제3국의 국제중재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중국 중재기관을 선정하는 것보다 좀 더 유리할 것이다.

4) 중국은 기관중재만 인정함에 주의

중국은 임시중재를 인정하지 않고 기관중재만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중재절차를 진행할 경우 중재조항에 중재기관을 명시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만약 중재조항에 중재규칙만 명시하고 중재기관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혹은 외국의 중재규칙으로 중국에서 중재한다고 명시했을 경우에는 중재조항 자체가 무효가 된다. 때문에 한국기업은 만약 임시중재를 원한다면 절대로 중국을 중재지로 하면 아니 되고 만약 중국을 중재지로 하였다면 무조건 중재기관을 명시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3. 결론

한중 중재기관을 비교하여 본 결과, 한국은 유일한 중재기관인 KCAB에서 국내·국제중재를 다루고 있고 중국은 CIETAC을 포함한 2개의 국제중재기관과 200개의 일반중재기관에서 국내·국제중재를 다루고 있다. 그 중 CIETAC은 AAA, ICC 다음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국제중재사건을 접수하고 있으며, 반대로 KCAB는 국제중재사건 접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이다.⁵⁶⁾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KCAB는 기준의 중재규칙이 있음에도 불구

55) 이주원, “중국 중재제도의 특징에 관한 소고”,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15권 제3호, 2005., 129면.

56) 표1을 보라.

하고 국제기준에 좀 더 가까운 국제중재규칙을 새롭게 제정하였으나 아직 적용된 적이 없다. 이에 논자는, KCAB가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면 중국처럼 중재기관을 국제중재기관과 일반중재기관으로 구분하여 KCAB가 국제중재전문 기관임을 강조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KCAB를 국제중재기관으로 정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국제중재규칙을 사용하도록 하며, 국내중재는 “KCAB 국내위원회”에서 기존 중재규칙을 적용하여 다루도록 하는 형식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중재절차와 판정에 대한 불복, 집행 및 집행거부 절차를 비교하여 본 결과, 양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중국은 기관중재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합의시 반드시 중재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재인은 중재인명부에서 선정하여야 하고 그 외에서 선정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위원장이 중재인을 선정할 경우에는 당사자들 국적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이는 중국중재의 잠재적 불공정성과 중국정부의 중재에 대한 간여의사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반면 KCAB 국제중재규칙은 국제기준에 맞춰 제정한 것이니만큼 절차적으로 아주 공정하다.

중국의 중재판정 집행은 국제적으로도 평판이 좋지 못할 만큼 아주 열악한데, 특히 집행거부사유가 대부분 집행대상재산이 없다거나 명확하지 않은 이유라는 데서 그 불공정성을 체감할 수 있다. 이는 뉴욕협약에 가입한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떨어뜨리는 문제임에도 국민을 보호하려는 국가의 의도적 행위이기 때문에 단기적 개선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는 위에서 제시한 몇 가지 대응방안을 포함한 대응책들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태경, "중국 상사중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29권, 2006.
- 대한상사중재원·한국중재학회, 「주해 중재법」, 2005.
- 석광현, "대한상사중재원의 2007년 국제중재규칙의 주요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49권 1호, 2008.
- 신군재, "KCAB 국제중재규칙과 CIETAC 중재규칙의 비교연구",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18권 제2호, 2008.
- 윤진기, "중국 중재법", 기업법연구, 한국기업법학회, 제12집, 2003.
- 이주원, "중국 중재제도의 특징에 관한 소고",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15권 제3호, 2005.
- 이호원, "한국에 있어서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13권 1호, 2003.
- 차경자, "중국의 설외 및 외국중재판정 강제집행제도 연구",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15권 제2호, 2005.
- 허익범, "중화인민공화국 국제상사중재법제의 이해와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Li Hu,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and Court Intervention in the PRC", a speech paper for the Inaugura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bitration, 2003.
- Peerenboon R., "Seek Truth From Facts: An Empirical Study of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n the PRC",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2001.
- Wang Sheng Chang,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 the PRC", *ICCA Congress Series No. 9*, 1999.
- 最高人民法院关于贯彻执行《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若干问题的意见, 1988년 1월.
- 人民法院处理与涉外仲裁及外国仲裁事项有关问题的通知, 1995년 8월
- 最高人民法院关于当事人对人民法院撤销仲裁裁决的裁定不服申请再审人民法

院是否受理問題的批覆, 1999년 2월.

KCAB 국제중재규칙(2007년 제정)

CIETAC 仲裁規則(2005년 개정)

한국 중재법(1999년 개정)

中國 仲裁法(1995년 제정)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협약(1958년 채택)

대한상사중재원: <http://www.kcab.or.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 <http://www.cietac.org.cn>

北京仲裁委員會: <http://www.bjac.org.cn>

中國海事仲裁委員會: <http://www.cmac.org.cn>

香港國際仲裁機關: <http://www.hkiac.org>

中國仲裁網: <http://www.china-arbitration.com>

부록 1. 중국 중재기관의 개관

	국제중재기관	일반중재기관
중재법상 규정	(제66조) CCPIT가 국제중재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10조) 1. 省政府가 소재한 市에 일반중재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2. 市政府가 중재위원회 설립을 위한 관련부서를 조직하여 상업회의소와 함께 중재위원회를 설립한다. 3. 설립 시 省政府의 사법행정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중재기관	CIETAC (CCPIT가 1956년에 설립) CMAC (CCPIT가 1959년에 설립)	1995년 중재법 시행 후 신설 및 증건된 일반중재기관: 북경중재위원회, 상해중재위원회, 낭경중재위원회, 광주중재위원회, 심천중재위원회 등 200개(2008년 말 통계)
관할범위	1. 국제적/접외적 분쟁사건, 국내분쟁사건 (CIETAC 중재규칙 제3조) 2. 중재규칙상에 국내중재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例: CIETAC 중재규칙 제5장)	1. 1996년 국무원은 일반중재기관에서도 국제중재를 처리할 수 있게 하였다. 2. 중재규칙상에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例: 북경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8장)
공통	1. 중재법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나 중국의 중재기관은 모두 OO중재위원회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 2. 중재법에 의하면 중국에는 CCPIT가 설립한 국제중재기관과 省政府가 소재한 市에 설립된 일반중재기관 두 부류가 존재하는데, 상술하였듯이 그 관할범위가 확대되면서 사실상 국제 국내중재기관의 구분이 없어지게 되었다.	

부록 2. 한·중 중재규칙 비교

	KCAB 국제중재규칙	CIETAC 중재규칙 (국제중재 일반절차)
중재합의	1.“KCAB 국제중재규칙에 회부”라고 합의. 2. 국제중재에만 적용. 3. 중재기관은 명시할 필요 없음 (임시중재를 원칙으로 함) 4. 표준중재조항(12면).	1. “CIETAC에서 중재” 혹은 “CIETAC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라고 합의. 2. 국제, 국내중재에 모두 적용. 3. 중재의 대상과 중재기관을 명시하여야 함. (기관중재만 인정) 4. 표준중재조항(11면).
중재신청	1. 중재신청서 제출 및 신청요금 납부. 2. 피신청인 신청서 수령 후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지나면 기한연장 신청서 제출해야 함. 3. 반대신청은 답변서 제출시 함께.	1. 중재신청서 제출 및 중재비용 예납. 2. 피신청인 신청서 수령 후 45일 이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지나면 중재판정부가 결정. 3. 반대신청 역시 45일 이내에 제출.
중재판정부	1. 합의가 없을 시 단독중재인을 원칙으로. 2. 당사자 합의로 중재인 선정. 3. 단독중재인-단독중재 결정 후 30일 이내, 3인중재인-양당사자가 각각 1인 선정 후 30일 이내에 선정된 2인이 의장중재인 선정. 4. 사무국이 중재인 선정시 양당사자와 국적이 달라야. 5. 기피사유를 안 후 15일 이내에 기피 신청. 6. 사무국의 기피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 원이 최종 기피결정.	1. 합의가 없을 시 3인중재인을 원칙으로. 2. 중재인명부 내에서 선정(인명부 외에서 선정 시 위원장의 확인 받아야). 3. 단독중재인-피신청인 신청서 수령 후 15일 이내, 3인중재인-중재통지 수령 후 15일 이내 각각 1인 선정, 동시에 의장중재인을 합의 선정. 또는 그 기간내 위원장에게 위임. 4. 위원장이 중재인 선정시 당사자들 국적 고려 할 필요 없음. 5. 중재인 고지의무, 고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에 기피신청. 그 이후에 알게 된 기피사유는 안 후 15일 이내에 기피신청. 6. 위원장이 최종 기피결정.
중재판정	1. 중재판정은 최종 서면제출일과 심리종 결일 중 나중의 일자로부터 45일 이내. 2. 중재인 과반수의 결의에 따름. 결의가 성립 되지 않을 시 의장중재인의 결정에 따름. 3. 중재인 전원이 서명. 4. 판정문 수령 후 30일 이내 당사자 오류 정정신청 가능, 신청 후 30일 이내 오류 정정해야 함. 판정후 30일 이내 판정부 오류정정 가능. 5. 판정문 수령 후 30일 이내 추가판정신 청 가능. 신청 후 60일 이내 추가판정.	1. 중재판정은 판정부 구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중재인 과반수의 결의에 따름. 결의가 성립 되지 않을 시 의장중재인의 결정에 따름. 3. 중재위원회 날인 및 판정을 내린 중재인만 서명. 4. 판정 내리기 전에 판정문 초안을 위원회에 제출, 확인을 받음. 5. 판정문 수령 후 30일 이내 당사자 오류정정 신청 가능. 신청 후 30일 이내 오류정정. 판정부는 판정문 작성 후 합리적인 기간내에 직권으로 오류정정 가능. 6. 판정문 수령 후 30일 이내 추가판정신청 가능, 신청 후 30일 이내 추가판정. 판정부는 판정문 작성 후 합리적인 기간내에 직권으로 추가판정 가능.

부록 3. 한·중 중재판정의 불복, 집행, 집행거부 비교

	韓國	中國
불복	<p>국내중재판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원에 제기하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에 의해서만 불복. (한국은 3심제) 판정문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기. 취소요건: 중재법 제36조 제2항 외국중재판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중재판정에 대해서 한국법원은 취소할 권한이 없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재판정 취소의 소에 의해서만 불복. 중재위원회 소재지의 중급인 민법원에 판정취소의 소를 제기.(중국은 2심제) 판정문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기. <p>국내중재판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재법 제58조에 해당하면 취소. <p>국제중재판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재법 제70조에 해당하면 취소. <p>외국중재판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중재판정에 대해서 중국 법원은 취소할 권한이 없음.
집행	<p>국내중재판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재법 제36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집행. <p>외국중재판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욕협약에 상호주의와 상사중재를 유보 조건으로 가입. 뉴욕협약 가입국의 판정일 경우 본 협약 적용. 뉴욕협약 가입국이 아닌 국가의 판정일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및 제27조 적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행신청은 모두 피집행인의 주소지 혹은 재산소재지의 법원에 함. 피집행인 혹은 그의 재산이 중국 영내에 있지 않을 경우, 관할권을 가진 국가의 법원에 집행신청을 함. 집행신청 기한: 양당사자 모두 혹은 일방이 자연인일 경우 판정 후 1년 이내, 양당사자 모두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일 경우 판정 후 6개월 이내. <p>국내중재판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충인민법원에 집행신청. <p>국제중재판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급인민법원에 집행신청. <p>외국중재판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급인민법원에 집행신청. 뉴욕협약에 상호주의와 상사중재를 유보 조건으로 가입. 뉴욕협약 가입국의 판정일 경우 본 협약 적용. 뉴욕협약 가입국이 아닌 국가의 판정일 경우 중국이 해당 국가와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 혹은 협약에 의함.
집행거부	<p>국내중재판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행거부사유: 판정취소 요건과 마찬가지로 중재법 제36조 제2항. <p>외국중재판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욕협약 가입국의 판정일 경우 협약 제5조에 해당하면 집행거부. 뉴욕협약 가입국이 아닌 국가의 판정일 경우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에 해당하면 집행거부. 	<p>국내중재판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행거부사유: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p>국제중재판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행거부사유: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p>외국중재판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욕협약 가입국의 판정일 경우 협약 제5조에 해당하면 집행거부. 뉴욕협약 가입국이 아닌 국가의 판정일 경우 중국이 해당 국가와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 혹은 협약에 의함.

ABSTRACT

The Comparisons o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Systems between Korea and China

Oh, Won suk · Li, Jing hua

The rapid growth of Korea-China trade that was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in 1992, led China to surpas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o become Korea's largest trading partner in 2009. "The largest trade" also means "the most disputes", so it is essential to study on dispute settlement and enforcement system of the two.

Therefore, in order to make the traders correctly understand and use the arbitration as a dispute settlement method in both China and Korea, this article makes a comparative study on arbitration system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finally, it analyzes the enforcement situation of arbitral award in China, then provides the author's personal recommendations as a countermeasure against the poor enforcement system in China.

Key Words: Arbitration Rules in China, CIETAC, KCAB,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